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 규정

2008. 12. 8. 제정
2018. 6. 20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센터는 차세대 양자 정보 처리 기술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확립하고, 세계 수준의 양자메타물질 연구 선도과학자 및 미래 연구인력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양자메타물질에 관한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2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3. 양자메타물질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엄 개최
4. 학계, 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5. 양자메타물질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
6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)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
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센터에 위상제어 양자메타물질연구실, 수송제어 양자메타물질연구실, 복합분광 및 응용연구실, 교육훈련실, 공동기기지원실, 자료관리실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.

②위상제어 양자메타물질연구실은 위상제어 양자메타물질의 광물성 및 전자물성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수송제어 양자메타물질연구실은 수송제어 양자메타물질의 포논-전자 및 전자-전자 상호작용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복합분광 및 응용연구실은 양자메타물질에 대한 복합분광을 이용한 연구 및 양자소자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교육훈련실은 석·박사과정생 및 관련 산업체 연구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공동기기지원실은 효율적인 기기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⑦자료관리실은 센터의 각종 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⑧행정지원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실장) ①행정지원실을 제외한 각 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연구교수) ①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②연구교수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①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제 13 조 (존속기간) ①센터는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설립근거가 된 사업 종료 후에도 센터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14 조 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12. 8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